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휠체어 탑승 버스의 설비장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)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. 1. 저상버스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수 가. 특별시와 광역시: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나. 시(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)와 군: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2.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: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	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"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.	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 1. 특별시: 국가 40퍼센트,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.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: 국가 50퍼센트,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	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>④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휠체어 탑승 버스의 설비장착 기 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u>